

부산지방해양수산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4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

- 1. 「해운법」제41조. 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」관련입니다.
- 2.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4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가. 지원 대상

- 1) 지원 기간: 2024년 1분기(2023년 12월 ~ 2024년 2월 구입분)
- 2) 대상 선박: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
- 3) 지원 대상: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(MDO,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)
 - * 혼합 블랜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(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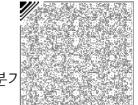
4) 지급 단가

유류세보조금	경유(MGO) 1 l 당 152.37원('22. 7. 1. ~ '24 02.29.) * 출하전표상 제조장에서 반출한 일자를 기준
유간연동보조금	{평균 판매가격(원/ℓ) - 기준가격(1,700원/ℓ)} × 50% * '23.4월 지원 종료 후 '23.07.11.~ '24.02.29. 구매분에 한해 재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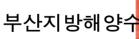
*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의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

나. 신청 방법

- 1) 제출 서류: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, BDR 등 관련 증빙 서류
- 2) 제출 기간: 2024.03.04.~ 03.08.(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한)
 - * 우리청 누리집(http://www.portbusan.go.kr) **알림소통 알림 공지사항**
 - ☞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(신청 서식), e나라도움 등록 절차 안내
- 3. 아울러, 유류세보조금을 **부정한 방법**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^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,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^②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^③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
- 붙임 1. 2024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1부.
 - 2. e나라도움(보조금통합관리망)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(24년 1분기



수산청장 등

수신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한국해운조합 이사장(경영지원실경 회장 부산지부장, 부산예부선선주협

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권결 2024. 2. 27. **원인순 전**결 2024. 2. 27.

협조자

시행 선원해사안전과-6443 (2024. 2. 27.) 접수

우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/ http://www.portbusan.go.kr

전화번호 051-609-6313 팩스번호 051-609-6319 / lilyotvally@korea.kr / 대국민 공개